



## 나의 권리 알기

### **주택을 찾는 가정폭력의 생존자(피해자)에 대한 불법 차별 <sup>1</sup>**

#### **가정 폭력의 생존자(피해자)에 대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연방법으로 특정 상황에 한하여<sup>2</sup> 임대주 및 부동산 관리자와 같은 주택 제공업체가 세입자 및 세입신청자를 가정 폭력의 생존자라는 이유로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택 제공 업체가 가정 폭력 생존자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보다 생존자 세입자를 불공평하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더 큰 보증금, 또는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세입자 혹은 세입자를 원하는 사람이 가정 폭력의 생존자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 및 세입 신청자보다 더 높은 소득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차별의 예입니다.

#### **어떤 주택 제공업체가 세입자 및 잠재적 임차인을 차별할 수 없나요?**

거의 모든 유형의 주택 제공업체가 세입자나 세입을 원하는 잠재적 세입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의 생존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sup>3</sup>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집세, 시장 비율 보다 저렴한 집세, 시장 비율 주택, 노숙자 숙소, 가정 폭력 대피소, 또는 모텔에 거주하는 경우 특정 유형의 차별로부터 연방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sup>4</sup>

#### **가정폭력 생존자라는 이유로 차별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sup>1</sup> According to the Federal Law. 42 U.S.C. §§ 3601-3619

<sup>2</sup> According to the Federal Law. 42 U.S.C. §§ 3601-3619

<sup>3</sup> The Fair Housing Act does not apply to owner occupied homes, dwellings with four or fewer units where the owner occupies one of the units, some housing controlled by religious organizations and private clubs, and some housing designated for elderly persons. 42 U.S.C. §§ 3604(b); 3607.

<sup>4</sup> 42 U.S.C. § 3604.



## 1. 주택 제공업체 (집주인)에게 생존자로서의 권리를 알리기

생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택 공급자에게 고지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폭력, 신용불량, 또는 범죄기록으로 인한 퇴거, 혹은 렌트가 거부된 경우 FVAP의 [가정폭력 생존자 라는 이유로 거부당한후 집주인이나 주택 관리자 에게 재고요청 \(Requesting a Landlord or Property Manager Reconsider Your Application After Being Denied Housing Because You Are a Survivor of Domestic Violence\)](#)하는 견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가정폭력 생존자라는 이유로 높은 금액의 집세나,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FVAP의 [집주인이나 재산 관리자에게 가정 폭력의 생존자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것을 요청 \(Requesting a Landlord or Property Manager Stop Treating You Unfavorably Because You Are a Survivor of Domestic Violence\)](#)하는 견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내 법적 옵션 둘러보기

주택 제공자가 공정 주택법을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미국 법무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법률 지원 기관과 문의하여 최상의 옵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지 법률 지원을 찾으려면 <https://www.lawhelpca.org/> 방문하십시오.

## 왜 차별이 연방법으로 불법인가요?

공정주택법(The Fair Housing Act)은 집주인, 주택당국, 부동산 관리자 등 주택 제공업체가 장애,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가족 지위 또는 국적으로 인해 세입자 또는 잠재적 세입자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 가정 폭력 생존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어떻게 보호되니까?

공정주택법은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따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존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생존자에 대한 차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의 생존자에 대한 차별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불법적인 성차별일 수 있습니다.<sup>5</sup>

- (1) 생존자에 대한 차별이 생존자에 대한 성별 또는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차별적인(불평등한) 대우일 때 불법적인 성차별일 수 있습니다. 혹은<sup>6</sup>

<sup>5</sup> Alvera v. CBM Group, Case No. 01-857 (D. Or. 2001).

<sup>6</sup> Sara K. Pratt, U.S. Dept. of Housing and Urban Dev., Office of Fair Hous. & Equal Opportunity, Assessing Claims of Housing Discrimination agains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under the Fair Housing Act and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2011).



(2) 가정 폭력의 생존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다른 (불평등한) 영향을 미칠 때 불법적인 성차별일 수 있습니다, 즉,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자주 영향을 미칩니다.<sup>7</sup>

### **불법 차별: 차별적인 대우**

차별적인 대우란 불평등한 대우입니다. 공정주택법은 생존자의 성별이나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불평등한 대우를 불법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남편이 부인을 폭행하여, 피해여성이 그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을 했고, 임대주는 피해여성에게도 일부 남편의 학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성을 퇴거시켰습니다. 임대주가 그녀를 퇴거 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부인'이 학대에 대한 (원인제공과 같은)책임이 있다는 성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생존자 세입자를 불평등하게 대할 타당하고 합법적인 이유가 없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가정 폭력의 생존자라는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가정폭력 생존자에대한 불법적인 차별이며 차별적인 대우입니다.

### **불법 차별: 차별적인 영향**

차별적인 영향은 비 생존자보다 가정 폭력의 생존자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립적인 정책이나 관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 심사 보고서에서 과거에 퇴거조치를 겪은 모든 지원자를 거부하는 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대자의 행동때문에 생존자가 주거지로부터 퇴거되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에, 생존자는 다른 입주 지원자보다 퇴거를 당한 기록이 더 많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 폭력의 대부분의 생존자는 여성이기 때문에<sup>8</sup> 세입자 기록 보고서에서 퇴거된 기록이 있는 모든 신청자를 거부하는 임대인의 정책은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심사 보고서에 퇴거를 당한 모든 신청자를 거부하는 정책은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주택을 거부당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차별일 수 있습니다.<sup>9</sup>

**더 자세한 내용은?** FVAP로 전화문의(510) 858-7358 )나 이메일([info@fvaplaw.org](mailto:info@fvaplaw.org))로 문의 바랍니다.

*Id.*

<sup>7</sup> *Alvera v. CBM Group*, Case No. 01-857 (D. Or. 2001).

<sup>8</sup> *Alvera v. CBM Group*, Case No. 01-857 (D. Or. 2001).

<sup>9</sup> *Id.* at 4-5; 24 C.F.R. 100.500(a).